

다) 연가의 승인

- (1) 교원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함
 (2)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수업일 중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함

■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제1항

1.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
2.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
3.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형제·자매의 질병,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
5.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
6.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·자매 장례식
7. 본인 및 배우자 형제·자매의 배우자 장례식
8. 본인 자녀의 입영일
9.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

(3) 연가는 반일단위로도 승인할 수 있으며,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봄

- 반일연가는 근무상황부의 종별란에 반일연가로 기재

(4) 휴업일 중 연가(반일연가 포함)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(나이스)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(사유[선택]을 드롭다운에 하여‘휴업일’선택), 수업일 중 연가(반일연가 포함)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(나이스)에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중 연가 사유에 해당하는 호를 입력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(제9호 사유의 경우 학교장이 ‘기타 상당한’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유란에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)

(5) 지각·조퇴·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사유를 기재한 후 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

라) 다음 재직기간 연가 사용

(1) 학교의 연가 승인권자는 교원에게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. 단,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해당 교원이 실제로 다음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, 연도 중 휴직·퇴직예정자는 연가 미리사용 가능 대상에서 제외

※ 연가 미리사용은 ①별도의 사전 내부결재를 받고 ②나이스로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함
 (사전 내부결재 없이 사용한 연가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따른 연가 공제로 인하여 초과 사용된 연가는 결근 처리.
 다음 재직기간 연가 미리사용 처리 불가함)

재직기간	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
6월 미만	3일
6월 이상 1년 미만	4일
1년 이상 2년 미만	6일
2년 이상 3년 미만	7일
3년 이상 4년 미만	8일
4년 이상	10일